

정보산업의 발달과 프라이버시

박재옥

영남대 법학과 교수

I.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유래

19세기 말 언론기업이 발달한 뉴욕등지에서는 일반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폭로 기사를 자주 게재하여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이러한 정신적 감성적 침해로부터 인격을 보호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의 권리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개념을 정리하여 입법과 판례를 지도한 「프라이버시의 권리」라는 논문은 「웨렌」과 「브랜다이스」에 의하여 1890년에 발표되었는데, 그것은 사교계의 관심을 모았던 웨렌 부인이 황색신문의 폭로 기사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그 정신적 고통을 구제하기 위하여 쓰여졌다.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여 정신적 감성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명예훼손과는 다르다. 양자는 모두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당시에도 가능했으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하여서는 그 때까지도 범죄행위나 불법행위가 아니었으므로, 처벌도 없었고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했다. 즉 프라이버시는 권리로서 인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는, 그 권리의식이 일반 국민에 의하여 고조됨에 따라, 판례와 입법을 통하여 권리로서의 지위를 쟁취하게 되는바, 그것에 관한 판례를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로버슨」 사건 1)

1920년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부정했다. 본건의 피고인 제분회사는 원고의 동의없이 부지중에 사진을 찍어, 포스터로 인쇄하여 그 회사의 상품인 밀가루 선전에 이용하고자 소매점 기타 공개장소에 붙였다. 원고는 그녀의 사진의 이용이 명예훼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진이 상업선전에 이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를 구제 받기 위하여 만 5천 달러의 배상을 청구했다. 하급법원은 그녀의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했으나 뉴욕주 최고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유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인정한 선례가 없고, 순수한 정신적 손해이므로 배상액의 산정이 곤란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융통성이 많은 프라이버시를 권리로서 인정하면 법적 보호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감소의 폐단과 재판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 등이었다.

로버슨 사건의 계속 중에 xmr 히 언론계에서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협된다고 하여 맹렬한 반대를 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뉴욕에서는 이 「로버슨」 판결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 해인 1903년에는 뉴욕주의회가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제정하였는 바, 그 내용은 광고, 상업목적으로 생존자의 성명·초상을 사용하는 자는 경범죄로 문책된다는 것과 자기의 성명, 초상 등을 이용당한 자는 정지명과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2. 「멜빈」 사건 2)

다음으로 1931 년의 「멜빈」 대 「레이드」 사건에서는 법원이 프라이버시의 근리를 정면으로 인정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지난날 매춘부이었으며,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아 세인의 주목을 끌었다. 무죄판결을 받은 후 그녀는 새로운 출발을 하여 멜빈씨와 결혼, 가정을 가지고 정숙한 모범적 주부로서의 생활을 하고, 사교계에서도 상당한 인정을 받아, 과거를 모르는 많은 인사들과 교우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고는 그녀의 동의없이 영화를 제작하여 상영하였는바, 이 작품은 그녀의 과거의 실화에 근거를 두고, 결혼전의 본명을 작품에 사용했으며, 선전광고에서도 원고인 그녀에 관한 실화임을 강조했다.

이 영화의 상영으로 원고의 지인들은 그녀를 조소하고 멀리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5 만 달러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캘리포니아주의 최고법원은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이 판결은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법원이 승인한 결정적인 것으로서, 개척자의 역할을 했다 고 할 수 있다. 법원은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근거를 헌법에 보장된 불가양의 권리인 행복추구권에 있다고 제시했을 뿐아니라, 과거의 판례들을 분석하여 약간의 일반원칙을 끄집어 내었다.

그것은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인격에 따르며, 프라이버시 침해는 부당행위이며, 프라이버시의 공표에 동의하면 그 권리는 소멸하며, 유명인의 프라이버시는 보통 사람보다 좁으며, 일반인의 관심 및 정당한 논평보도의 특권 앞에서는 프라이버시는 없다는 것 등이다.

3. 「힐」 사건 3)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힐」 사건이다. 1952 년 3 인의 탈옥수가 필라델피아 교외에 살고 있는 「힐」 씨의 가정에 침입하여 19 시간 동안 인질소동을 벌였다. 이 사실은 곧 신문에 보도되었으며, 「힐」 씨는 기자회견에서 그의 가족은 누구도 침입자에 의하여 다치지 아니했으며 예의있는 취급을 받았다고 했다. 그 후 「힐」 가는 사람의 접촉을 피했으며, 그 사건의 기억을 지워버리기 위하여 종전부터 계획하여 오던 기회를 앞당겨서 코네티컷으로 옮겼다.

1953 년 「조셉 헤이즈」 가이 사건을 소재로 Desperate Hours 라는 소설을 썼고, 이 것은 곧 영화와 연극으로 꾸며졌다. 이 작품들은 교외에 살고 있는 「힐리야드」 가가 3 인의 탈옥수에 의하여 받은 시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점에서 「힐」 가의 사건과 같았다. 더욱이 연극은 가족중의 한 사람이 탈옥수에 의하여 곤욕을 치르는 장면이 있어서 「힐」 가가 경험한 것과 상이한 것이지만, 일반인은 「힐」 가가 실제 그렇게 당한 것으로 오인하기 쉬웠다.

「라이프」 잡지는 『실제 있는 범치는 연극에 박진감을 불러 일으킨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연극의 장면과 「힐」씨의 옛날 그 주택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동잡지에 게재했다.

상심한 「힐」씨는 그 가족이 체험한 바를 허구의 연극으로 공연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 하여 작가와 잡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기사는 뉴스가치의 특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연극과 사실의 일치여부는 불확실하며, 「힐」가의 불행에 대한 관심은 상업주의에 의하여 자극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3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II. 전통적·소극적 의미의 프라이버시의 권리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세기말에 태동하여 1930년대를 거쳐 60년대에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사법상 헌법상의 권리로 확립되었다. 이 때까지의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혼자 있게 할 권리」를 의미했다. 원래 인간은 사회적동물로서 타인과 어울리는 가운데서 행복을 찾고 자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자기 모습으로 돌아와서 혼자서 고독을 즐기거나 가족과의 곤란한 생활속에서 정신적 안식을 얻을 수 있다. 프라이버시란 말은 「타인과의 교제 또는 공적 관심에서 물러난 상태 즉 소거」를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 제 16조의 「사생활」의 의미와 그대로 일치된다. 이러한 소거상태는 우리에게 더없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인격의 성역이며, 여기에 대한 침해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의미의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소극적 · 은둔적 · 탈사회적 · 내향적 · 자기지향적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전통적 소극적 의미의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내용은 은거상태에서 한 인간에게 행복과 정신적 안식을 주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은 포괄적인 것으로서 하나 하나 열거하기는 어렵다. 대체로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열거하면, 인격의 징표인 성명권 · 초상권, 신용상표권,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주거통신의 불가침, 헌법상 특히 문제되는 것은 신체의 비밀, 부부의 비밀, 출산의 자유, 결사의 비밀, 정치적 신념에 관한 비밀 등등으로서, 함부로 아무데나 공개하기 싫은 모든 것이다.

III. 정보산업의 발달과 프라이버시

1. 정보산업의 발달과 정보사회의 전개

현대사회를 정보사회 또는 지식사회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특징은 정보산업 또는 지식산업의 발달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사회란 말의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공업제품보다는 정보의 가공처리가 더 많은 가치를 낳는 사회, 정보가 에너지나 서비스보다 더 유력한 자원이 되고, 정보를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되는 사회를 말하며, 또한 정치적으로는 정보가 통치의 불가결의 수단이 되어버린 사회를 말한다. 이러한

정보사회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유체물의 물량의 풍부 대신에, 무형의 지식 및 지식을 상호 결합하여 운용하는 방법이 인간생활에 새로운 가치를 가져 오게되며, 따라서 정보산업 지식산업이 활기를 띠고 경제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D. Bel14)은 산업혁명 이후 출현하여 비교적 최근까지 존속한 사회를 공업화 사회라 부르고, 이 사회에 있어서는 기계에 의한 생산에서 부가 쌓아진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현대에 와서 이미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탈공업화사회(post-industrial society)에 있어서는 기업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지적인 것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한다.

Fritz Machlup5)는 현대미국의 자본주의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지식산업이라 하고, 지식산업이 전경제체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근래에 와서 현저하게 높아졌으며, GNP의 성장률은 전산업부문의 약 30%에 해당하는 지식산업 부문의 고도성장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한다. 그 지식산업이란 교육, 연구개발, 보도매체, 정보계 및 정보서비스의 다섯 분야로서 이루어 진다고 한다. P. Drucker 도 현대의 특징으로서 지식 기술의 혁신을 지적하고, 새로이 등장하는 산업 중의 하나로 지식산업을 들며, 그것은 재무나 서비스가 아닌 창의와 정보를 만들어 유통시키는 것이라 하고 있다.

2. 컴퓨터의 기능

정보사회에 있어서 지식산업을 수행하는 주인공은 컴퓨터이다. 컴퓨터의 용량증대 기능개발과 보급은 지식산업을 활발하게 전개시켰고, 종래의 인간의 지혜로써 해결할 수 없었던 어려운 문제를 척척 풀어 내며, 미래사회를 예측하는 역할마저도 수행하고 있다. 정보산업에 있어서 컴퓨터의 활용을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무한한 자료처리, 저장·인출능력- 컴퓨터는 방대한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나 즉시 인출할 수 있다. 재래식의 서류철이나 수동식에 의한 자료정리의 번거로움에서 해방되어, 있을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컴퓨터에 입력·정리된 바, 인간의 손에 의한 자료의 분석 정리는 유한한 것이지만은 컴퓨터에 의한 자료처리(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에는 한계가 없다. 따라서 정보모집에 있어서도 퍼어킨슨의 법칙이 적용되어, 정보처리능력이 증대되면 될수록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려는 의욕이 생기고, 정보는 정보를 부른다고 한다.6)

(2) 정보의 중앙집중관리-전술한 방법에 의하여 발달된 방대한 자료은행 (data bank)은 각각 분리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회선(online system) 및 시분할방식(time-sharing system)에 의하여 어느 한 장소에 집중관리된다. 가령 국가적 차원에서 일체의 정보를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대량관리를 행한다면 정확한 판단과 낭비없는 종합계획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연방예산국은 1960 년대의 중반 단일통계 센터로서의 National Data Center 를 구상했으나, 프라이버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의회 시민 언론기관 등의 반대에 부딪혀서 중단된 일이 있다.

어떤 기업체의 차원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판매, 생산, 재고관리의 시스템이 각각 분리되어있었으나, 요즈음은 기업체의 각 계층의 관리자에게 기업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종합적 성격을 가지는 경영정보시스템(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이 발달했다.

이것이 더 발전하면 전국적 규모의 정보망으로서 전국 타보시스템(NIS, national information system)으로 확대된다.

(3) 모의실험-컴퓨터와 경영과학의 수법을 이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모델화하여 해석하는 것을 모의실험(simulation)이라 한다. 인간과 컴퓨터의 대화로서 복잡한 자연현상이나 경제현상에 대하여 모델을 작성하여 갖가지 변수를 부여하여 그 예측결과를 고집어 낸다.

(4) 컴퓨터화한 미래사회에 대한 두 가지 견해-이상과 같은 능력을 가진 컴퓨터는 국가 · 지방 자치단체 · 사기업 등에 의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현대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물건이 되어버렸다. 군사 · 산업 · 교통 · 통신 · 의료 · 복지 · 교육 · 세무 · 범죄수사 등의 모든 행정에 걸쳐서 컴퓨터는 놀라운 능력과 편리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컴퓨터를 비롯한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기 곤란하게 한다.

낙관론은 컴퓨터의 활용으로 사회생활은 보다 윤택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며, 인간의 지적 창조가 개화하는 고도의 인간본위사회를 실현할 것이다 한다. 이것을 컴퓨터가 조성하는 유토피아 즉 Computopia System 이라고 관망한다. 또한 컴퓨터에 의하여 실시되는 대량감시체제를 채용하는 관리사회에 있어서도, 후술하는 비판론이 염려하는 바와 같은, 개인의 자유가 반드시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 한다. 그것은 대량감시 시스템이 비능률적이며, 비용이 많이 들고, 감시기관 상호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비판론은 공행정의 수행이든 사기업의 경영이든 대량정보를 한곳에 집중관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관리사회가 진행하게 되고, 이것은 인간에게 비극을 가져온다고 한다.

관리사회란 소수 엘리트의 대중지배와 기계화 체제화에 의한 인간소외의 사회를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중앙통제, 조직의 대형화, 비인간화, 인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말살이 있다고 한다.7)

3. 타보수집 · 자료은행 · 자료은행간의 연결

정보사회에 있어서 자유의 상실, 프라이버의 위기 및 인간소외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정보수집기술 정보은행 및 정보의 집중관리에 관하여 상세한 고찰을 하여야 할 것이라 본다.

(1) 정보수집방법-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탐지하는 감시기술(surveillance technology)은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진보하고 있다. 국민의 사상, 언론, 사적 행위, 통신의 비밀 등에 대한 국가의 감시를 제한하려는 노력이, 수세기 동안 서구사회에 있어서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항쟁의 중심과제이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인이 이것을 침해하는 도청이나 또는 물리적 침입(physical entry)을 범했을 때에는 범죄로서 처벌을 했으며, 정부가 이러한 행위를 하려 할 때에는 영장을 필요로 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차 대전 이후의 과학 기술의 진보는 도법적인 방법으로 사생활의 가장 은밀한 곳도 밝혀질 수 있을 만큼 감시기술을 발전시켰다.

A. F. Westin 은 이러한 감시를 신체감시, 심리감시, 자료감시로 나누어 고찰한바 있다.8)

신체감시(physical surveillance)란 시청각의 기구를 사용하여 개인의 소재, 행동, 회화, 사진 등을 본인도 모르게 그 의사에 반하여 감시추적하는 행위인 바, 이러한 새로운 기술발달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큰 위협으로 대두했다. 심리감시(psychological surveillance)란 구술, 필답 등의 심리조사를 통하여, 또는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진술이 자기의 인격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충분히 의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정보를 밝히게 하는 것이다. 자료감시(data surveillance)란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 교환, 정리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 각각 별도로 수집된 상세한 자료가 상호연결 종합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말살해버리는 지식을 산출하게 된다.

상술한 감시에 쓰여지는 도구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 야간암시장치(snooper-scope), 망원촬영 및 적외선 필름을 장치한 암중촬영 등은 어둠속에서도 육안의 시계를 띤 어딘 곳에서도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 은행, 상점, 호텔의 실내 또는 화장실이나 로비 등 고객이나 고용원들이 모이는 곳에 숨겨진 비디오 테이프를 갖춘 폐쇄회로 TV(closed circuit TV)도 위협적인 감시자이다.

도청과 녹음장치도 발달하여 어떠한 은밀한 속삭임도 도청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한다.

예컨대, 상의의 첫째 단추에 마이크를, 둘째에 송신기를, 세째에 전지를 달고 특수한 실로 연결하면 그것을 입고 있는 본인은 까맣게 모른다. 스파이크 마이크나 점착성 마이크는 차내·실내·가구 등 어느 곳이나 눈에 띄지 않게 쉽게 장치된다. directional microphone 으로 방향을 겨누면 꽤 먼곳의 벤치에 앉아서 속삭이는 남녀의 정담을 들을 수 있다.

레이저광선을 이용하면 수마일 밖에서도 도청이 가능하다. 또한 트랜지스터의 개발은 도청과 녹음을 훨씬 간편하게 했다고 한다.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조사나 성격조사는 프라이버시와의 관계에는 크게 문제된다. 오늘날 미국에는 2 천 내지 3 천명의 거짓말 탐지기조사자(polygraph examiner)가 있으며,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조사를 업으로 하는 회사의 업무량이 증가 일로에 있다 한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범죄조사에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인사분류 보안심사에 있다고 한다.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조사는 1950 년에서 60 년 사이에 특히 경찰, 소방공무원과 보건성의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많이 채택되었다. 시카고에서는 150 인의 경찰관이 1960 년 강도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의혹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의 신세를 졌다.

캘리포니아주 스톡튼시의 경찰관 지망자들은 전직, 충성, 교통사고기록, 체포기록, 육체적 정신적 건강, 경제적 안정성, 음주, 습관성 약물복용, 교육, 이혼력, 비정상적 성행위 등등 약 300 종의 질문을 거짓말탐지기에 의하여 테스트 받았다. 그 테스트의 결과 40% 내지 60%의 응모자가 부적격의 판정을 받았다.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조사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며, 몇몇 주에서는 고용의 조건으로 이 테스트를 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테스트의 결과 해고된 자에게 민사상 특별한 구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노동조합의 반대도 강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 문제되는 바는 본인의 동의이다. 많은 경우 사용자는 이 테스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장하는데 불과하다고 변명하지마는, 테스트에 불응하면 취업 또는 승진의 기회가 박탈당하므로, 동의의 임의성이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정부기관 및 사기업이 구직자에 대하여 상술한 테스트를 요구하는 것은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하여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구직의 대가로서 의식뿐 아니라 잠재의식에

대하여서도 탐색을 당해야 하며, 이렇게 하여 쌓인 정보가 누적되어 사용자로부터 사용자에게로 전달되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 대한 영원한 편견이 만들어 진다. 장차에 있어서 심리감시의 또 하나의 분야는 2 차 대전 후 발달한 약물이다. 스코플라민, 소러움, 편타술 등으로써 실시되는 소위 실토하는 약(truth drug)은 의식이나 의욕에 영향을 주어 감추고 있는 것을 공개하게 한다. 그러나 약은 사람에 따라 다른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약에 의한 진술이 반드시 신빙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심리감시에 있어서 다른 하나의 분야는 뇌파측정(brainwave monitor) 이다. 뇌파측정은 종전처럼 환자의 두개골에 측정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항공인의 헬멧같은 것을 쓰고 있으면 머리카락을 통하여 뇌파가 측정되며, 컴퓨터로 하여금 뇌신호를 분석하게 하면 어떤 자극에 대하여서는 어떤 뇌신호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예컨대, 측정자가 피측정인이 보고 있는 색깔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독심술(thought reading)이란 먼 장래의 일이겠지마는, 외과수술로 뇌에 심어진 마이크로 전자장치는 인간의 기능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다. 쥐, 금붕어, 기타 동물을 실험하여, 의식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미약한 전자충격을 뇌의 일부에 줌으로써 고락, 공격성, 무저항 및 갑작스러운 성격변화 등이 이루어진다고 증명되었다. 인간에 대한 한정적 실험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인간의 신비와 존엄성이 어디까지 벗겨질 것인지, 인간이 신에 대하여 어디까지 도전을 할 것인지 알 수 없다. 우리 인간은 또 하나의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2) 자료은행-전술한 바와 같은 정보수집 기술의 고도화는 개인 사생활이나 숨기고 싶은 모든 것을 쉽게 폭로시킨다. 그와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 또는 자료는 그 종류와 목적에 따라 정리 기록된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행정, 실업, 의료, 과학 등등의 모든 분야에 전자정보저장검색 (electronic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의 장치를 갖추고 있으므로, 그 전의 시대에 비교하여 훨씬 더 논리적 사실에 입각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오늘날 정보시대에 있어서 실로 아는 것이 힘이며, 정보는 권력이요 지배의 도구이다. 산업 조직의 복잡화, 관료조직의 거대화 및 사회과학 자료의 수집 분석 등의 경향에 따라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산출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간은 자기자신을 위하여, 과학의 진보를 위하여, 효과적인 사회를 위하여, 정부로부터 조그마한 혜택을 받기 위하여, 자기의 정보를 거대한 흐름 속에 계속 쏟아내고 있다. 예를 들면, 출생과 결혼의 기록, 학교성적기록, 국세조사, 군복무기록, 해외여행, 충성안보심사기록, 조세보고서, 토지 · 가옥에 관한 기록, 은행거래장, 각종 허가신고서, 신용거래, 자동차등록, 직업력, 병역, 범죄력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오늘날의 유통경제의 구조는 신용거래 카드를 출현시켰다. 이것은 전에는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아니했던 소비행위를 명시하게 되는바, 어디서 언제 어떤 물건을 얼마나 샀다는 것과 여행 · 오락 등의 사생활도 기록에 남기게 했다.10) 이러한 다종다양한 기록을 종류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또는 사기업이 각각 보유하고 있다. 대중사회에 있어서 생활의 표준화 및 인구의 유동은 정부나 사기업으로 하여금 인사기록의 작성 보유를 위한 조사활동을 필요로 하게 했다. 방대한 기록의 보유야 말로 거대한 조직에 있어서 사람을 채용·해고하거나 금전대부 또는 해외여행허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을 제공하여 준다.

미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자료은행들이 있다. 1966년 워싱턴 포스트지의 조사에 의하면, 사설조사기관인 Retail Credit Company는 7천명의 조사원을 고용하고 있으면서, 광범위한 목적을 위하여 사람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4,200만명에 관한 기록을 보유하고, 1년간 1억불의 수입이 그 활동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20년이 지난 오늘날 모든 숫자가 훨씬 상회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어떤 전국적 규모의 신용조사회사(creditbureau)는 미국 총인구의 약 반수인 1억명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은 수입·상무·지불기록·은행예금 등 경제적 형편이 주된 것이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줄 금융업자와 신용거래를 하게 될 백화점주인이 고객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사생활 예컨대

음주·연애·모험·약물중독·정신건강·이혼력 등등 알려지면 본인에게는 불쾌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어느 뉴욕의 신용조사소는 8백만 명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해마다 7만 5천 건의 명예훼손적 사항을 수록하고 있다고 한다. 이용자인 자동차보험회사 등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험 가입자가 사고라도 낸다면 만불 또는 몇 백만 불의 지출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일체의 자료를 대소를 막론하고 빠짐없이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방성은 1천 4백만 명의 이력과 인종차별 문제·월남전에 관련된 데모에 참가한 폭도 7백만 명에 대한 자료를 컴퓨터에 기록했다. 연방인사위원회는 8백만 공무원의 경력을, FBI는 숫자는 분명치 않지만 10만의 공산주의 동조자와, 8천만 미국시민의 지문을 가지고 있으며, 소문 등의 미확인정보를 갖고 있다 한다.

내국세세입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매년 8천만통의 납세신고서(tax returns)를 수리하는데, 거기에는 성명·연령·직업·심신이상유무·결혼 가족상황·전주소·직업력·이혼력·자동차운전여부·배심원의 경력·상금은 물론 각종의 현금여부 등이 기록되어, 그 사람의 종교 사상경향 가치관 등을 엿볼 수 있다. 연방보건교육 후 생성은 1억 6천 5백만 명의 자료를 갖고 있으며, 연방주택국은 연간 주택융자신청인 약 백만 인에 대하여 사설탐정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결혼생활의 파탄은 주택융자금상환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애정문제도 조사대상이 된다.

이상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 정보사회에 있어서, 정보는 사기업에게는 돈이며 정부에게는 권력이다. 정보를 쥐는 자가 우위를 점하고 지배력을 가진다. 피지배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감시를 받으며 평생을 통하여 기록의 감옥(Record-Prison)에서 빠져 나올 수 없다.

한 인생이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기록은 시작된다. 임신하면 태중발육과정이, 출산하면 체중·건강상태·눈의 빛깔 등이, 사망했을 때는 일시·장기·원인 등이, 생애중에는 중요한 사건 등이 모두 기록된다.

일세대전 조지 오웰의 유명한 소설인 「1984」은 금붕어 항아리 속의 인간생활(Fishbowl Existence of Human Life)과 정치·기술·사회적 혁신이 가져오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지적한 바 있었다. 약 350년 전 청교도들은 과거의 모든 속박과 기록으로부터 깨끗이 도피하여 신 천지(New World)에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인들은 대륙의 어디를 가나 기록의 꼬리는 미행을 한다. 따라서, 오늘날 미국시민은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숨을 곳도 없이 자기의 알몸을 드러내고 있다. 언제나 감시 · 기록당하고 있다는 공포는 자유에 대한 놀라운 위축적인 효과(chilling effect)를 준다.

정보사회에 있어서는 개인의 모든 언동이 기록되므로 각자는 어떤 발언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그것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를 두려워하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등을 행사할 수 없는 심리적 위축을 느낀다. 정보사회,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Data Bank Society 또는 Dossier Society에 있어서는 자기의 능력보다는 자기가 computer file에 어떻게 기록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는 과장된 표현도 없지 않다.

여기에서 한가지 부가해야 할 것은 미국에 있어서 National Data Center의 창설을 위한 움직임과 그 반응이다. 1965년 미국경제협회 사회과학연구심의회에 설치된 「경제자료의 보관 및 리용에 관한 위원회」는 4년간의 조사연구 끝에 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연방정부의 각 기관이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 통계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외부의 연구자에게나 정석의 다른 기관에게 현저히 불편할 뿐 아니라,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낭비가 많다고 비판하고, 연방의 모든 기관이 작성한 기본통계자료를 보관 활용하기 위하여 Federal Data Center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¹⁾ 이 보고서의 정수기관인 예산국은 이를 검토하여 자료의 집중관리에 효율적 이용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제안을 Kaysan 보고서를 통하여 제출했다. 이러한 제안이 발표되자 개인정보의 중앙집중화가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의가 연방의회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학계나 언론계에서는 손해가 더 많다 하여 이에 반대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향유한 프라이버시의 정도는 그 침해자의 능력에 좌우되었다.

그 능력이란 ① 입수한 산만한 자료를 결합하는 능력, ② 특정개연에 관한 중요하고 확실한 자료를 기록하는 능력, ③ 광범한 이동성을 갖는 사회에서 특정개인의 행동을 추적 파악할 수 있는 능력, ④ 특정개인에 관하여 이미 수록된 자료에 접근하는 능력, ⑤ 자료를 통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이것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지금까지의 침해자는 이상의 능력이 모두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인정보를 중앙에 집중하고 컴퓨터로 다각적으로 이용하게 하면 침해자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반대여론에 부닥쳐 National Data Center의 창설은 중단되었으나, 정부 각 기관은 분야별로 이것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미 보아온 바와 같다.

(3) 자료은행간의 연결망 - 컴퓨터의 개량은 그 기계를 사용하는 자들 사이에 자료의 공유를 촉진시켰다. 컴퓨터언어의 표준화와 한 언어계에서 다른 언어계에의 번역의 실현은 컴퓨터로 하여금 서로 직접 교신하여 자료의 수수교환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혁신은 경찰과 같은 동일한 대조직체 내의 기관끼리 정보의 교환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보험회사나 신용조사소 등과 같이 서로 독립한 조직간에도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발전 중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교육, 은행, 의료기관 등의 각 분야별로 Data Center 또는 Bata Pool을 창설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특정분야의 정보를 총집결시켜 그것 종합한다는 편리뿐 아니라, 밀리 떨어진 곳에서도 중앙자료은행에 접근하여 정보를 입력 인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FBI는 국립범죄정보센터를 설립하여 필정보를 직접 단말기(terminal)에 의하여 인출하도록 하고 있다.

(4) 표준통일식별표 -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인적 정보를 수록한 자료은행의 연결망이 기술적으로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자료은행에 수록되는 개인은 각각 바른 사람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특정할 수 있는 기호나 번호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수억의 인구 중에는 동명이인 많고 생일이 같은 자도 많으므로,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일련번호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표준통일식별표(standard universal identifier)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Social Security Number 가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번호는 당초 사회보장행정에 쓰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지금은 납세신고서,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등록, 군인, 은행 거래, 외국인등록 등등에 사용되어 신원을 밝히는 표준통일식별번호로서 사용되고 있다.¹²⁾북구제국에도 이미 사회보장의 증진과 함께 이러한 번호가 있다. 일본에서는 행정사무처리에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어 능률향상, 사무처리의 신속 정확, 각종 자료의 종합적 이용, 각종 보고서 통지서의 간소화 등을 이유로, 행정관리청이 중심이 되어 사무처리용 통일 개인코드의 실시를 계획한 바 있었으나, 국민의 반대로 중단상태에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번호가 표준 통일식별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아무런 저항없이 열 손가락의 지문을 적어 주고 주민등록증번호를 어떤 서류에나 기재하고 있는 인적 정보의 집중관리와 활용에 편의를 가져 왔을 것이나, 프라이버시의 조직적 파괴라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대부분일 것이다.

4. 인간소외·정보조작·소수엘리트의 지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전산화된 개인정보은행의 존재는 어떤 감시 하에서 살고 있다는 자유의 위축을 느끼게 하고 그 위력 앞에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한다.우리들은 우리에게 관한 정보를 반강제로 또는 강제로 공개하기 싫으면서도 공·사의 Data pool 속에 쓸어넣고 있다. 정보수집기구는 FBI, CIA, 국세청, 여권과, 시청 등의 행정기관과 사기업인 신용조사기이다. 이들은 개인이 갖다주는 자료에 만족치 않고 스스로 수집한다. 마음만 먹으면 갖가지 Orwellian Technology 를 동원하여 아무리 은밀한 개인정보라도 찾아내고야 만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보유·사용된다. 각 기관에 흩어진 자료를 한 곳에 집중시키면, 어떤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국민은 등에 일련번호를 붙인 피관리자들이며, 제품의 통일 Code Number 처럼 번호로서 취급되고, 국민총백지화가 실현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록의 감옥에서 살게 된다.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우리들의 알몸을 감출 곳이 없다. 그 누군가가 감시 · 기록하고 있으리라 생각되면, 그 언동이 달라진다. Chilling Effect 를 느낀다. 언론·집회 등의 자유는 헌법상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해진다. 이것은 Dossier Dictatorship 이며, Computerized Nazism 이다.

현대가 지식사회·정보화사회인 만큼 우리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그 정보란 조석으로 신문방송이 갖다 주는 상업용의 소비정보인 것이 보통이며, 공해이기가 일쑤이며,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관리정보는 입수하기 어렵다. 미국이 월남전에 처음 개입할 때에, 국민은 그 의미를 몰랐다. 정확한 정보는 기밀이라는 이름아래 정부에서만 보관했기 때문에 일반국민은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였다.

우리의 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등이 심의 통과되어도 그 효력이 미칠 때까지 국민은 그 의미를 모른다. 관리정보의 결점에 그 이유가 있다. 정치·경제·군사 등 중요한 정보는 권력자 또는 소수의 지적 엘리트에 집중되고 그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국민에게는 정보빈곤의 현상이 생긴다. 국민은 불필요한 소비정보의 풍부속에서도 관리정보의 빈곤을 누리게 된다.

독점자본주의에서 독점정보주의로 이행되고 일반국민은 관리정보의 빈곤으로 제이의 문맹기에 들어선다.¹³⁾ 따라서 정보를 가진 자가 불리한 정보의 얽매, 유리한 정보의 유출 등으로 정보 및 언론조작을 해도 일반국민은 그것을 알 수 없다.

이것은 민주정치의 종말이며 관리사회의 진행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 있어서는 알 권리 · 정보공개청구권은 중요한 기능을 다함을 알 수 있다.

IV.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재구성

상술한 바와 같은 정보사회에 있어서는, 어떤 개인에 대하여 그 누군가가 환하게 알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이미 소멸해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은 이미 옛날과 같은 프라이버시는 없어졌다 할지라도 최소한도로 자기에 관한 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그 정보는 정확하며, 누구에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요청이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내용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개념을 정의하면 「국민이 자기에 관한 정보의 전파를 통제하는 권리」라 할 수 있다.¹⁴⁾

이러한 현대적 적극적 의미의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종전의 「혼자 있게 할 권리」처럼 포괄적 전국가적인 것이 아니라, 실정법이 인정하는 구체적인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현대적 적극적 의미의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내용은 각 국가의 입법의 태도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여러 나라의 프라이버시보호법이 규정한 공통적인 것을 들어 보면 자기기록에의 접근, 열람, 복사할 권리, 잘못된 기록에 대한 정정청구권, 자기기록의 유통 이용에 관하여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이다.

미국 · 서독 · 캐나다 · 프랑스 · 오스트리아 ·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문명국가들이 상술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V. 결론-우리나라의 경우-

프라이버시와 같은 새로운 권리가 탄생하려면, 먼저 그 사회의 진화과정에서 새로운 이익이 생성되고, 다음으로 그 이익의 수호를 위한 그 사회구성원의 노력이 법정투쟁으로 또는 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례 또는 입법에 의하여 그 권리가 확립된다.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문명인의 가장 고귀한 권리이다. 이 권리의 수호는 법률가만의 일이 아니라, 일반인의 권리의식의 문제이다. 일반인의 의식의 강도야 말로 프라이버시의

권리를창조적으로 수호해 나가는 원동력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사회의 문화수준에 관심을 가지 는 모든 인사는 이 문제에 대한 방관자는 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여건이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생성하게 하고 있으며, 일반국민의 교양의 수준도 성숙하여 그러한 권리의식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헌법 제 16 조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우리들은 이러한 좋은 조건하에서 헌법이 규정한 「권리 위에 잠」 잘 것이 아니라, 문명인이 아니고서는 의식할 수 없는 불가시 · 불가항적인 이 권리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이익을 수호하고 향유함으로써,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기하고 행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주)

- 1) Roberson v. Rochester Folding Box Co., 171 N.Y .S38.64N. E.442 (1902).
- 2) Melvin v. Reid. 112 Cal. App. 285,297, pac.91(1931) .
- 3) Time, Inc. v. Hill, 385S.S. 374(1967).
- 4) D. Belt, The Postindustrial Society, in Technology and Social Change, Columbia University Press, p. 44 (1946).
- 5) F. Machlup,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nowledge in the U.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 6) A. R. Miller, The National Data Center and Personal Privacy, The Atlantic, Nov. 1967. 9. 54.
- 7) George Orwell, 1984 : 小林職樹, 현대기본권의 전개. 암파서점, p. 153 (1976) 등 참조.
- 8) A. F. Westin, Privacy and Freedom. N. Y, Atheneum, p.68 (1967) .
- 9) Westin. op. cit., p. 147.
- 10) Westin. ibid.. p. 159.
- 11)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Preservation and use of Economic Data, Th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The Computer and Invasion of Privacy, Hearings 89th Congress, 2d Sess, July 1966. Appendix 1. p.195.
- 12) U.S. Dept. of H. E. W. ed., Records, Computer and the Righte of Citinzens, M IT, p. 108 (1973).
- 13) 伊達秋雄, 국제토론, 프라이버시의 위기, 학양서방, p.80 (1973) ,
- 14) A. R. Miller, The Assault on Privacy, p.226: C. Fried Privacy, 77Yale L. J., p.482 (1968) 등 참조.

- 서울대학교 법학과, 동대학원(법학박사)
- 저술: 「행정법」, 「정보화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리」 외
-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과 교수